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6년 6월 8일

나. 발 의 자 : 김길자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 2016년 6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16.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조항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안 제4조, 안 제5조)
-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사항 변경 (안 제4조)
 -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률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내용 구체화(안 제8조)
-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 위원회위원 중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증원
 - 가정복지과장, 아동청소년 팀장을 업무담당 과장, 업무담당팀장으로 수정
- 지역아동센터 위원 해촉 사항 정비(안 제12조)
 - 심의와 관련하여 비밀준수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및 위원회의 구성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
 - 1)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등,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급식비,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 2)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에서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해촉 사유에 심의와 관련 비밀 준수를 누설한 경우와 민원을 야기한 경우를 추가하여 업무의 공정성 기준을 마련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용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
----------	-----

발의연월일 : 2016년 5월 일

발 의 자 : 김길자의원 외 7 명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개정 및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안 제4조, 안 제5조)

나.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내용 구체화(안 제8조)

다.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 위원회위원 중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증원

라. 지역아동센터 위원 해촉 사항 추가(안 제12조)

- 비밀준수 사항을 누설한 경우

-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6. 5. 26 ~ 5. 31)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제16조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4조”로 하고 “지역아동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제1호”을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센터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를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법 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4조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률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2조제1호”를 “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호 “센터 운영비”를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기타 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9조제3항제1호 중 “구의원 1명”을 “구의원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에서 “가정복지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 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제4호를 신설한다..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준수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u>지역아동 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센터"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 ----- ----- ----- ----- <u>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u>을 -----</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 2. "<u>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u>----- ----- ----- ----- 3. (현행과 같음)

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략)

4. "센터 종사자"란 법 제1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주체)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1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4. "센터 종사자"란 법 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5.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률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
----- 법 제3조제1호의 ----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2. 기타 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신설)
(신설)

제9조(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영등포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구의

제8조(사업비의 지원) -----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 종사자 인건비 등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9조(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

1. 영등포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구의

원 1명

- 2. 교육청 관계자
-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 4. 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 6.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7. 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원 2명

- 2. (현행과 동일)
- 3. (현행과 동일)
- 4. (현행과 동일)
- 5. (현행과 동일)
- 6. (현행과 동일)
- 7.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

- 1. (현행과 동일)
- 2. (현행과 동일)
- 3. 심의와 관련한 비밀준수 사항을 누설한 경우

<p><u>(신설)</u></p> <p>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p>	<p>4. <u>심</u>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p> <p>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p>
--	---